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융복합 연구

유수진*, 윤선희**, 황문영**, 백진숙***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성민사회복지연구소***

A Comparative Convergenc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Disabled Child Carers and Official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u-Jin You*, Sun-Hee Yoon**, Moon-Young Hwang**, Jin-Suk Paik***

Ph.D Course Completion in Univ. of Seoul*, SungMin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SungMin Social Welfare Institut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성년후견제도, 장애자녀 보호자, 공무원, 인식비교, 인권존중, 사회통합,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disabled child carers and official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tudy the settlement method. First of all, 68.9% of the disabled child carers and 43.9% of the officials were aware of the system. Both the carers(90.2%) and officials(94.3%) responded that it was a helpful system for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erms of preferred guardian type, carers responded ‘parents’ and officials responded ‘professionals’. All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rganization’ was the most neede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order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stabilize as the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promoting general public abou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ultivate a high quality public guardian,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founded.

Key Words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Respect for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Convergence

Received 27 March 2015, Revised 6 May 2015

Accepted 20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Jin-Suk Paik
(Sung Min Social Welfare Institute)

Email: yffibjs@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오늘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과 권리존중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은 인간존엄의 기본이자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다[1]. 장애인도 타인의 보호와 간섭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얼마를 소비할 것인지 혹은 누구와 어디서 살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통합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공적·사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인적·물적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하고 2008년 비준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등을 제정하였다. 2011년 3월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충실하고자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자녀¹⁾ 보호자를 중심으로 부모 사후에 장애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서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행위무능력제도가 가지고 있던 인권과 권리 침해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개혁하였다. 행위무능력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정도나 잔존능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재활의 기회마저 배재함으로써[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박

탈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과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시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인권보장과 권리옹호가 강조된 사회복지제도이기도하다[2,3]. 주거, 교육, 문화·여가, 의료 등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복리적 측면의 후견 사무는 사회서비스 신청과 계약, 연금이나 수급비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5]. 더욱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발굴과 지원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비와 후견사무비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을 2013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의 경우, 후견심판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청구와 후견사무 감독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임무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로서 순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인식과 더불어 인권과 권리 존중,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도시행 이후 전국 가정법원에 신청된 후견심판청구

1) 본 연구에서는 2014년 5월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인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다.

는 총 908건(2014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하더라도 독일(2011년 기준 연간 24만4천건)과 일본(2011년 기준 연간 3만1천건)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이 원인이며, 제도에 대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6].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은 당사자의 제도 접근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년후견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제도시행 초기에는 9.0%였던 제3자 후견인이 시행 10년 뒤인 2010년에는 41.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가 정착될수록 제3자 후견인, 특히 공공후견인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 성년후견제도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의 경우 공공차원에서의 체계가 조직화되어 있다. 독일은 주정부 사회복지서비스국에 소속된 성년후견청과 주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단체인 성년후견사단이 유기적으로 후견제도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8], 영국은 법무부 소속의 공공후견인청을 설립하여 후견활동을 관리하고 있다[6]. 성년후견제도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년후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성년후견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제도도입 배경이나 주요내용, 과제 등을 고찰하는 연구[5,9,10,11,12,13], 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14,15,16],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17,18,19,20,21,22],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1,2,3,4,23]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는 제도 시행 이전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의 인식[24]과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비교 연구[25] 등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의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간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과 권리존중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성년후견제도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2.1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른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복리적 측면의 일상 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존중,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가족기능의 변화와 가족구성원의 유대관계 약화, 탈가족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부양과 보호의 문제가 가족 내 책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7,26].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족제도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신하여 보호와 돌봄의 책무가 국가와 사회로 확대된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2,9]. 즉, 성년후견제도는 인권과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제도이다[27]. 제도가 취지에 맞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후견인의 직무의 범위 한해서만 후견(필요성의 원칙)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이나 지역사회 등의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른 원조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후견(보충성의 원칙)하여야 한다[2,18].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이다. 후견사무는 재산적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주거선택, 의료적 치료 및 요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신청과 계약 등 다양한 영역의 신상보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신상보호 차원에서의 복지증진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회복지제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7,23,26,28].

후견인 선임에 있어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도 선임될 수 있으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법인후견은 자연인 후견인에 비해 지속적인

후견사무가 가능하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후견사무를 연계하여 법률과 복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견사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의견대립의 중재나 중대 사안의 해결을 위해 조직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9]. 후견인은 1인이 아닌 복수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분리하여 후견하거나 복수의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공동으로 후견할 수도 있다. 후견인의 감독역할을 했던 친족회가 폐지되었고 대신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되는 다원론적 제도이다.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써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성년후견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특정후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미래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15]. 임의후견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후견사무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후견을 원하는 당사자의 선택과 의사가 보장된다.

후견심판 청구권자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이며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후견심판청구권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호나 취약계층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확인과 상담,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었다. 또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장애인이 공공후견인 등을 통해 적절한 후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30].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그 외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후견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청구비용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후견인 1인당 월10만원) 등이다. 공공후견인은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을 이수 받을 예정인 후보자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판청구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은 민법 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특정후견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0].

3.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3.1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독일은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1992년 1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성년후견제도 이외에 사회제도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이용된다. 성년후견제도 신청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성년후견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배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31]. 따라서 독일의 성년후견제도는 행정비용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당사자의 접근성, 안정성, 자기결정권 증대, 이익증대를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있다[31].

성년후견 개시 요건은 심리적,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본인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성년후견을 유형화하지 않고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범위 내에서 성년후견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성년후견이 요구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가능한 원조방법이 성년후견제도에 우선한다[32]. 자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 개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자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법인후견 시에도 자연인에 의한 후견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시 자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면 실제적인 후견 업무는 법인에 속한 자연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통해 충분한 후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되, 2년 이내에 자연인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한다[18].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개별적 접촉 의무가 강화된 ‘후견·성년후견법개정법’이 2011년 7월부터 발효되어 성년후견인은 평균 월 1회 피후견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여야 한다. 또한 관청후견의 경우 최대 50인 이하의 후견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18]. 성년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성년후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년후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견이나 보호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의 선임기간을 5년으로 하고 성년후견의 종료나 연장, 직무범위의 축소 여부 등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 등이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적 전달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성년후견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신고, 성년후견인 선임이나 해임, 성년후견인의 업무 범위와 내용 결정,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등의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성년후견청은 주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소속된 기관으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사정 및 관련정보를 성년후견법원에 제공하는 등 성년후견법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주요 업무는 성년후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교육기회 제공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성년후견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한다. 성년후견사단은 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익적 성격의 민간단체이다.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성년후견인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고 직업적인 성년후견인을 통해 전문 성년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법률에 의해 성년후견제도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청, 성년후견사단 및 성년후견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33].

3.2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영국의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은 성년후견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2005년에 제정되어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이들의 결정을 지원하되 당사자의 의사결정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신능력법은 5가지 원칙[34,35]이 적용되는데, 먼저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항상 추정하고, 둘째, 의사결정 지원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만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객관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넷째,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데 있어 최선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피후견인을 위한 지원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정신능력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영속적 대리(Lasting Powers of Attorney, LPA)제도는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측면의 영속적 대리(복지 LPA)와 재산관리 측면의 영속적 대리(재산관리 LPA)로 구분된다. 영속적 대리인은 공공후견청에 등록함으로써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개시된다. 영속적 대리인의 변동사항은 모두 공공후견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공후견청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Deputy)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감독은 공공후견청과 보호법원이 담당한다[34].

보호법원은 정신능력법 시행에 따라 창설된 독립법원으로 기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에 대한 사항까지 심판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재판 외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적비용투입을 최소화하고 있다[36]. 영속적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공후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공후견청은 보호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와 대리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공공후견청에서는 대

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은 재산관리매뉴얼과 의사결정매뉴얼로 구분되며, 의사결정매뉴얼에는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매뉴얼 등이 따로 있다[11]. 공공후견청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과 교육, 1차적 감독기능을 하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한다[17].

3.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일본은 1999년 민법상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4월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초고령자 등의 권리옹호와 신상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자기결정권의 보장,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를 이념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37]. 제도는 후견, 보좌, 보조 유형의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된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가족과 제3자,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복수후견 선임도 가능하다. 제도가 시행된 2000년에는 가족이 선임되는 비율이 91.0%였으나 2012년에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제3자 후견인이 51.5%까지 상승하였다[10]. 제3자 후견인의 증가에 따른 전문직 후견인의 인력풀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17]. 시민후견인은 법인후견과 더불어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1인 가구의 후견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7]. 무연고자와 같이 성년후견인 적임후보자를 찾기가 곤란한 경우 법인후견인이 필요하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후견을 위해서는 법인후견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후견 건수는 전체 후견선임 건수에서 낮은 비율이지만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36], 주로 사단법인이나 NPO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법인후견으로 선임된다. 법인후견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을 기반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후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8].

최근에는 노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과 시정촌을 중심으로 ‘시민후견추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7]. 주요 내용은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실시, 시민후견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체제 구축, 시민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활동지

원, 시민후견인의 활동추진에 대한 사업 등이다[39]. 시범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친족중심에서 시민후견인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켰으며, 사법(가정재판소)과 행정(시정촌)과의 유기적 연합과 사회복지협의회, 비영리법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공익적 관점에서의 후견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7].

4. 연구방법

4.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S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의 일환으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자녀 보호자와 S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년후견제도 이해하기’ 설명회에서 실시한 원자료이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료 중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2차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장애자녀 보호자 122명, 공무원 414명의 설문지가 포함되었다.

4.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40]에서 활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은 성별, 연령, 자녀장애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인지여부는 ‘알고 있었다’=1점, ‘모르고 있었다’=0점으로 측정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인권존중에 유용한지를 묻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후견인 활동의향은 ‘의향 있다’=1점, ‘의향 없다’=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후견인 선호 유형, 필요한 후견사무 유형,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희망 사항에 관한 문항은 응답범주의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4.3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5. 연구결과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는 조사대상자인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모두 여성의 비율이 각각 86.1%, 64.8%로 남성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보호자의 경우 40대(43.5%)와 50대(39.4%)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공무원은 30대(35.0%)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3.3%)와 40대(21.5%)가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호자의 자녀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50.8%)와 자폐성장애(43.4%)의 합이 94.2%로 집계되어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발달장애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N	%	N	%	
Gender	Female	105	86.1	268	64.8
	Male	17	13.9	145	35.0
	No answer	0	0.0	1	0.2
Age	Below&29	2	1.6	73	17.6
	30-39	9	7.4	145	35.0
	40-49	53	43.5	89	21.5
	50-59	48	39.4	96	23.3
	60-69	7	5.7	3	0.7
	70&Over	1	0.8	0	0
	No answer	2	1.6	8	1.9
Type of Disability of Disabled Child	Intellectual Disability	62	50.8	N.A.	N.A.
	Autistic Disorder	53	43.4	N.A.	N.A.
	Mental Disorder	3	2.5	N.A.	N.A.
	Other Disorder	3	2.5	N.A.	N.A.
	No answer	1	0.8	N.A.	N.A.
Total	122	100.0	414	100.0	

N.A.= Not Applicable

5.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5.2.1 성년후견제도 인지 여부

조사대상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 인지여부에 대한 비교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두 집단 간 성년후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에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었다($\chi^2(1)=23.415$, $p<.001$). 장애자녀 보호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25.0%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Perception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Yes	84	68.9	182	43.9	23.415 (df=1)	.000***
No	37	30.3	228	55.1		
No answer	1	0.8	4	1.0		
Total	122	100.0	414	100.0		

***p <.001

5.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인지 여부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인지여부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통계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chi^2(1)=0.101$, $p>.05$),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인지여부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이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Perception on Public Guardianship Support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Yes	40	32.8	131	31.6	0.101 (df=1)	.751
No	80	65.6	281	67.9		
No answer	2	1.6	2	0.5		
Total	122	100.0	414	100.0		

5.2.3 인권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간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chi^2(3)=7.882$, $p<.05$). 장애자녀 보호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장애인의 인권존중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 높았으며,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보호자에 비해 8.6%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Useful Degre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Human Rights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Strongly Agree	33	27.0	93	22.5	7.882 (df=3)	.049*
Agree	77	63.2	297	71.8		
Usually	10	8.2	18	4.3		
Disagree	1	0.8	0	0		
Strongly Disagree	0	0	0	0		
No answer	1	0.8	6	1.4		
Total	122	100.0	414	100.0		

*p <.05

5.2.4 후견인 선호 유형

후견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한 장애자녀 보호자, 공무원 간 인식 차이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교차분석 실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chi^2(7)=23.940, p<.01$), 공무원의 경우 장애자녀 보호자에 비해 후견인으로 '전문가'가 적합하다는 응답률은 12.3% 더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경향은 장애자녀 보호자가 더 높았으며, '공공후견인'을 선호하는 경향은 공무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Preferred Type of Guardianship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Parents	29	23.8	112	27.1	23.940 (df=7)	.001**		
Brothers and Sisters	19	15.5	35	8.4				
Relative	2	1.6	15	3.6				
Public Guardian	8	6.6	50	12.1				
Professionals	23	18.9	129	31.2				
Corporation Guardian	13	10.7	20	4.8				
Religious	4	3.3	4	1.0				
Others	2	1.6	3	0.7				
No answer	22	18.0	46	11.1				
Total	122	100.0	414	100.0				

**p <.01

5.2.5 필요한 후견사무 유형

<Table 6>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견사무 유형에 대한 비교결과이다. 필요한 후견사무 유형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37.075, p<.001$). 후견사무 유형은 크게 재산관리 후견과 신상보호 후견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재산관리는 '재산관리'와 '은행업무'이며, 신상보호는 '주거 및 시설입소', '의료서비스이용', '복지서비스이용', '취업관련', '교육관련', '문화·여가관련', '기타 업무' 등이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자녀 보호자 중 신상보호 등과 관련된 후견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인 반면, '재산관리' 및 '은행업무'와 같은 재산관리 후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무원이 보호자에 비해 17.1%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Required Type of the Adult Guardianship Duties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Property Management	44	36.1	209	50.5	37.075 (df=8)	.000***
Banking	2	1.6	18	4.3		
Admission of Housing and Facility	16	13.1	31	7.5		
Use of Health Care Services	12	9.8	16	3.9		
Use of Welfare Services	5	4.1	62	15.0		
Employment	5	4.1	5	1.2		
Education	1	0.8	3	0.7		
Culture Leisure	3	2.5	3	0.7		
Other Services	5	4.1	5	1.2		
No answer	29	23.8	62	15.0		
Total	122	100.0	414	100.0		

***p <.001

5.2.6 후견인 활동 의향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간 후견인이 될 의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chi^2(1)=50.281, p<.001$), 후견인이 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 비율이 공무원에 비해 27.4%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Intention for Guardianship Activities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Yes	83	68.0	168	40.6	50.281 (df=1)	.000***
No	18	14.8	226	54.6		
No answer	21	17.2	20	4.8		
Total	122	100.0	414	100.0		

***p <.001

5.2.7 성년후견제도 개선 희망 사항

성년후견제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장애인 보호자, 공무원의 인식 차이는 <Table 8>에 정리되어 있다.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chi^2(7)=26.666, p<.001$). 두 집단 모두 성년후견제도 업무를 담당할 ‘국가 전담기관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공무원보다 5.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공무원보다 3.0%, 성년후견제도 ‘홍보 확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보호자에 비해 13.7% 높은 비율로 개선 희망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

<Table 8> Improvement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tegory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hi-Square Test	
	N	%	N	%	χ^2	P값
Expand Promotion	6	4.9	77	18.6	26.666 (df=7)	.000***
Establishment of National Organization	35	28.7	96	23.2		
Simplified of Application Process	4	3.3	49	11.8		
Support of Guardianship Office Work Costs	10	8.2	22	5.3		
Guardian Secured	5	4.1	31	7.5		
Support of the Guardianship Duties	3	2.5	29	7.0		
Strengthen Guardianship Supervision	12	9.8	28	6.8		
Others	0	0	1	0.2		
No answer	47	38.5	81	19.6		
Total	122	100.0	414	100.0		

***p <.001

었다. 둘째,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 대다수는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유용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인권존중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장애자녀 보호자 90.2%, 공무원 94.3%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자녀 보호자의 경우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은 부모(23.8%), 전문가(18.9%), 형제자매(15.5%), 법인(10.7%)이며, 공무원은 전문가(31.2%), 부모(27.1%), 공공후견인(12.1%), 형제자매(8.4%)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성년후견제도의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장애인 보호자(28.7%)와 공무원(23.2%) 모두 ‘국가 전담기관 설치’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자는 ‘후견감독기능 강화’(9.8%), 공무원은 ‘홍보 확대’(18.6%)를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해 두 번째로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년후견제도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가 지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존중,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과 지향점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결정 대행제도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 지원의 최후수단으로 보충적, 부분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의미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잠재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발굴, 공공후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체계와의 연계·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의 홍보는 장애인당사자나 보호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제도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질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이나 후견이용 건수가 증가하면서 제3자 후견인의 비율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의 경우 제3자 후견인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장애자녀 보호자와 가족들의 신뢰는 아직

6.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 보호자의 68.9%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43.9%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장애자녀 보호자 32.8%, 공무원 31.6%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훈련된 전문후견인의 공급 한계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공공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사무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 수립,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도 전담기구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안내와 상담, 후견심판 청구, 후견사무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담기구 설치하는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적·정책적 제도 보완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eong-Seon Park, A Study on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ocusing on Valu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No. 16, pp.155-170, 2011.
- [2] Yun-Young Choi, Lee-Bae Kim, An Exploratory Analysis to the Practical Tasks for Community Welfare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Adult Guardian System.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9, pp.53-77, 2014.
- [3] Yun-Youn Choi, A Study of the Issues on the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7, pp.97-121, 2012.
- [4] Chan-Young Yoon, Legal Task of Social Welfare Law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No. 2, pp.111-129, 2014.
- [5] Sang-Mook Kim, Sung-Ho Yoon, A Study on the Problem of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Law Review*, Vol. 50, pp.517-540, 2013.
- [6] Hui-Ju Choi, The Mea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Viewed from the Welfare Aspects and Challenges. pp.109-116,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hecks Conducted One Years Symposium*, 2014.
- [7] Byeong-Joo Jeon, A Study on Activation of Citizen Guardians in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1-10, 2013.
- [8] Lee-Bae Kim, Yun-Youn Choi, Run the System Constructed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roduced. pp.92-95,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2013.
- [9] Kwon-Chul Shin, A Study on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Adult Guardianship: Overcoming the Past Mistakes.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Vol. 2, No. 2, pp.39-88, 2013.
- [10] Byeong-Joo Jeon, Do-Yeon Cho, A Study on Cost Problem i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9, pp.1-11, 2013.
- [11] Seung-Heum Baek, Task and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Law Review*, Vol. 24, No. 1, pp.159-200, 2013.
- [12] Il-koo Yun, Problems and Challenges due to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ChonnMan Law Review*, Vol. 32, No. 2, pp.173-203, 2012.
- [13] Cheol-Ung Je,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Preparation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Journal of Family Law*, Vol. 27, No. 1, pp.1-40, 2013.
- [14] Sun-Koung Choi, In the Information Age,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KIECS*, Vol. 9, No. 4, pp.483-490, 2014.

- [15] Jae-Ug Ko, Guardian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8, No. 1, 2014.
- [16] Sung-Hae Cho, Problems of Guardianship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Comparison Labor Law*, Vol. 30, pp.183-228, 2014.
- [17] Byeong-Joo Jeon, Keon-Ho Kim, Adult Guardians Misconduct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8, No. 6, pp.141-151, 2013.
- [18] Seoung-Heum Beak, Revisions of 'Betreuungsrecht' in Germany and Its Impact on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Wonang*, Vol. 29, No. 4, pp.295-391, 2013.
- [19] Hyun-Jin Kim, Les Régimes de Protection Juridique Pour un Majeur Vulnérable en France-Sur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Principalement. *The Journal of Family Law*, Vol. 26, No. 1, pp.71-126, 2012.
- [20] Won-Tae Kim, A Study on the Procedural Concerns of Adult Guardianship in the State of New York, the U. S. A. *The Journal of Family Law*, Vol. 25 No. 3, 2011.
- [21] Tae-Young Yoon, Tasmania guardianship system. *The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No. 2, pp.57-77, 2014.
- [22] Yoon-Hwa Keum, Adult Guardianship in Ontario, Canada. *The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No. 1, pp.117-138, 2013.
- [23] Kwon-Chul Shin, Adult Guardian in Social Welfare Services: Its Role and Limits.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No. 2, pp.33-63, 2012.
- [24] Eun-Gyeong Ma, Eun-Jeong Lee, A Study on the Special School Parents' Awareness and Intention to 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22, pp.160-178, 2013.
- [25] Dong-Il Chun, Kyoung Ran Kim, Cheol Ung Je,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Consumer Parents and Service Provider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11-23, 2013.
- [26] Yun-Young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Guardian System in Korea. *The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No. 1, pp.37-58, 2013.
- [27] Cheol-Ung Je, Korean Adult Guardianship and Its Future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Family Law*, Vol. 28, No. 2, pp.205-244, 2014.
- [28] Ko-Eun Kim, Review and Tasks of Adult Guardianship. *The Gyeongnam Development*, No. 124, pp.102-113, 2013.
- [29] 田沼浩, 日本の法人後見の實踐と展望. *The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No. 2, pp.41-47, 2014.
- [3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form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 Project. p.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 [31] Jin-soo Han, Main Cont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Progress Directions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Germany Training Reports Conference*. pp.7-13,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2010.
- [32] Seung-Heuma Beak, Comparative Study on De lege Ferenda of Care and Control System.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Vol. 15, No. 2, pp.17-52, 2005.
- [33]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Germany Training Reports*. pp.1-42,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2010.
- [34] Cheol-Ung Je, Ju-Young Park, Discussion on the Reform of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Im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The Journal of Family Law*, Vol. 21, No. 3, pp.275-310, 2007.
- [35] Myoung-Hyun Lee, Welfare Society Initiative of the UK Adult Guardianship Law: Support Self-determin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Journal of Democracy & Human Rights*, Vol. 12,

No. 3, pp.407-443, 2012.

- [36] Ju-Hyeong Woo,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through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System General Forum Announcement. pp.35-39,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abled Person's Right in Seoul, 2011.
- [37] Gwon-Cheol Sin, Associ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ocial Welfare System. pp.78, JipMunDang, 2013.
- [38] Myung-Jung Kim, Trends and Task of Adult Guardianship in Japan. International Labor Brief, Vol. 8, No. 6, pp.64-79, 2010.
- [39] Su-Cheol Im, Citizens Guardian Aspect Ways to Activate the Spirit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Seminar Series for the Settl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Guardian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Statement. pp.45-46,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Guardianship System, 2012.
- [40] Yong-Chan Byeon, Min-Hee Gang, Song-Hee Lee, Kwang-Seok Jeon, Study on Social Welfare Suppor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pp.19-5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유수진(You, Su Jin)



- 2009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수료)
- 2006년 4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 E-Mail : syou0407@hanmail.net

윤선희(Yoon, Sun Hee)



- 2010년 8월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성년후견제 이해하기"공동편저
- 1994년 10월 ~ 2011년 1월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 근무
- 2011년 2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부장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인권, 장애인복지, 청소년
- E-Mail : bettersun@hanmail.net

황문영(Hwang, Moon Young)



- 2011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4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대리
- 2012년 4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 E-Mail : hmy0484@naver.com

백진숙(Paik, Jin Suk)



- 2009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4월 ~ 2014년 12월 : 성민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근무
- 2015년 1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장애인 자립, 장애인가족복지
- E-Mail : yffbjs@naver.com